

## 1. 의결주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별표1]에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대상을 공공건축물 연면적 1천 $m^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여 국토교통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제3항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의 경우 [별표 1]보다 상향된 기준을 조례로써 규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3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는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 공개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공개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대상 확대([별표1] 개정)

시행령 [별표1]은 제로에너지건축(ZEB)인증 의무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21.12)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 대상을 기존 공공건축물 연면적 1천 $m^2$  이상에서 500 $m^2$ 으로 확대하고,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에 대해 의무화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나. 조례로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마련 (안 제12조 제3항 신설)

시행령 제12조 제3항을 신설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대상인 건축물이 취득해야하는 최소 인증 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단치자체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범위 내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규모 및 등급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만들고자 함

다.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 공개 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개정)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 공개대상을 현행 세대 수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로 확대하고자 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중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대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5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대상, 의무 인증등급과 그 시행시기를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150세대”를 “100세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천제곱미터”를 “2천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1 표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대상” 제목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으로 하고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대상 란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대상 란의 제1호 나목 중 “교육청”을 “교육청<sup>1)</sup>”로 하고, 같은 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

같은 표 제3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란 단서 중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요건 란의 “연면적”을 “연면적 등”으로 하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대상 란의 가목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하며, 같은 란 나목 “그 밖의 건축물: 1천제곱미터 이상”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다목 “그밖의 건축물: 5백제곱미터 이상”을 신설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란의 “1천제곱미터 이상”을 가목 “공동주택 30세대이상”, 나목 “그 밖의 건축물: 5백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중 요건 란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을 “에너지절약계획 제출 대상 여부”으로 하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대상 란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대상 란의 “제출 대상일 것”을 “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제출대상일 것, 나. 그 밖의 건축물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계

획서 제출대상 일 것”으로 하며

별표 1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시·도의 교육청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학교 중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1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생략)</p> <p>②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한다.</p>	<p>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중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대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5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13조(건축물 에너지 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가 구축된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p> <p>1. 전체 세대수가 <u>150세대</u> 이상인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p> <p>2. 연면적 <u>3천제곱미터</u> 이상의 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p>	<p>제13조(건축물 에너지 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① (현행과 같음)</p> <p>1. ----- <u>100세대</u> -----</p> <p>2. ----- <u>2천제곱미터</u> -----</p>	<p>(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대상, 의무 인증등급과 그 시행시기를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p> <p>제13조(건축물 에너지 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① (현행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1]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별표1]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별표1]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요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요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요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시·도의 <u>교육청</u>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시·도의 <u>교육청</u>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시·도의 <u>교육청<sup>1)</sup></u> 다. 「 <u>공공주택 특별법</u> 」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시·도의 <u>교육청<sup>1)</sup></u> 다. 「 <u>공공주택 특별법</u> 」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시·도의 <u>교육청<sup>1)</sup></u> 다. 「 <u>공공주택 특별법</u> 」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시·도의 <u>교육청<sup>1)</sup></u> 다. 「 <u>공공주택 특별법</u> 」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범위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u>공동주택</u> 및 「 <u>건축법 시행령</u> 」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범위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 <u>건축법 시행령</u> 」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범위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 <u>건축법 시행령</u> 」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u>연면적</u>	가. 공동주택 및 「 <u>건축법 시행령</u> 」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 나. 그 밖의 건축물: <u>1천제곱미터</u>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	4. 건축물의 <u>연면적</u> 등	가. <u>공동주택 30세대 이상</u> 나. 「 <u>건축법 시행령</u> 」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 다. 그 밖의 건축물: <u>5백제곱미터</u> 이상	가. <u>공동주택 30세대 이상</u> 나. 그 밖의 건축물: <u>5백제곱미터</u> 이상	4. 건축물의 <u>연면적</u> 등	가. <u>공동주택 30세대 이상</u> 나. 「 <u>건축법 시행령</u> 」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 다. 그 밖의 건축물: <u>5백제곱미터</u> 이상	가. <u>공동주택 30세대 이상</u> 나. 그 밖의 건축물: <u>5백제곱미터</u> 이상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제출 대상일 것	제출 대상일 것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제출 대상일 것	제출 대상일 것	5. <u>에너지절약계획서</u> 제출 대상 여부	가. 공동주택은 「 <u>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u> 」 제 64조 제2항에 따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일 것 나. 그 밖의 건축물은 「 <u>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u> 」 제 14조 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일 것	가. 공동주택은 「 <u>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u> 」 제 64조 제2항에 따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일 것 나. 그 밖의 건축물은 「 <u>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u> 」 제 14조 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일 것
			1) 시·도의 교육청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학교 중 「 <u>사립학교법</u> 」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1) 시·도의 교육청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학교 중 「 <u>사립학교법</u> 」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연 락 처	(044) 201 - 4091